



##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관련 협조요청

1. 귀 기관(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7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1.나.에 따라 모든 요양기관은 **임신부가 진료를 받을 경우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해야 하나**, 일선 요양기관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임신부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지속 발생 중입니다.**

\* 임신부 코드 신설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80호, '16.12.30)」 참고

3. 이에 동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귀 기관(협회) 소속 회원병원들을 대상으로 **상기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일선 요양기관이 차질 없이 상기 사항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대한병원협회장, 중소병원협회장, 한방병원협회장, 치과병원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의원협회장, 대한치과의원협회장, 대한신경외과학회장, 대한소아과학회장, 대한산부인과학회장, 대한한 의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한 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간호협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장,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나주병원장, 국립부곡병원장, 국립춘천병원장, 국립공주병원장,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재활원장, 국립마산병원장, 국립목포병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주무관 박영은 행정사무관 조하진 보험급여과장 정통령 전결 2017. 8. 18.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5984 (2017. 8. 18.)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정부 세 / http://www.mohw.go.kr  
 종청사)

전화번호 044-202-2746 팩스번호 044-202-3934 / bluee1977@korea.kr / 대국민 공개